

대한민국정부



제19655호 2019. 12. 24.(화)

【법 률】

○법률제16829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
○법률제16830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6
○법률제16831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16768호(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10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30250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30251호(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30252호(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
○대통령령제3025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
○대통령령제30254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1
○대통령령제30255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2
○대통령령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7
○대통령령제30257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53
○대통령령제30258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54
○대통령령제30259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55
○대통령령제30260호(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158
○대통령령제30261호(광안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3
○대통령령제30262호(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
○대통령령제30263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78
○대통령령제3026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79
○대통령령제30265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81
○대통령령제30266호(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183
○대통령령제30267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191
○대통령령제30268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	195
○대통령령제30269호(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196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044)205-1492, 205-1493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개시에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종료예정인 30일 전까지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장 신청은 1회로 한정하여 기간 연장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 재 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 ~ 제19조 삭제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4항”은 “법 제18조제4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판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24조(목적) ~ 제118조 삭제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부 칙

제1조 ~ 제24조 삭제

제25조(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하는 사업주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주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별표 5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27. 운수 및 창고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다.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